

■ 최신 판례 ■

[도산] 면책결정 확정 사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 이유 해당 여부

배성진 변호사 | 배기완 변호사

1. 사실관계

甲 저축은행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2013년 6월 26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.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년 6월 27일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(이하 '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')을 발령했고, 이에 대해 채무자인 乙은 즉시항고를 제기함.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16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림.

한편 乙은 2007년 6월 26일 파산선고를 받았고, 2007년 8월 22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(이하 '이 사건 집행채권')은 누락된 채 면책결정을 받았으며, 2007년 9월 7일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.

원심은 乙이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,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乙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하고,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.

2. 쟁점

집행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, 집행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사실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

3. 판시사항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, 집행개시요건의 존부,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,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.

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'채무자회생법')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,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,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.

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.

4. 해설

이 사건에서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.

이 대법원 판결은 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점, ② 면책결정의 확정은 그 확정 후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.

5. 다운로드 : [대법원 2013. 9. 16. 선고 2013마1438 결정](#)